제주발전연구 제22호
2018. 12. pp. 91~119.

제주지역 문화예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체별 역할에 대한 제언

- 문화예술분야의 소통과 참여에 의한 소외극복 맥락에서

고 혜 영* · 황 경 수** · 이 관 홍***

< 목 차 >

Ⅰ. 서론
Ⅱ.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Ⅲ. 제주도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확보를 위한 노력
Ⅳ. 주체별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영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관련 주제들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범위는 공연예술 중 음악부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되 개입은 적게 하여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며, 전문직 공직자를 선발하고 배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복권기금을 문화예술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의회는 예산지원, 소외계층 지원, 예술분야 전문가들의 고용창출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행정이 균형 잡히도록 도와주어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야 한다. 제주도립예술단은 순수예술성지향을 제1의 가치로 삼고, 고객들을 위한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제주지역 출신들의 일정부분 채용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문예회관은 나눔과 참여,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순수예술 보호와 활성화 유도, 문예회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혹은 지원조항 추가, 문예회관의 지향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청의 예산과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조직을 제고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구부문을 추가로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부문의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 협회는 소속회원, 소속단체들의 민원사항을 잘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며, 제주도청은 협회활동들 중 화합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파급 활동 및 축제에 지원을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문화예술분야의 조직관리, 보조금 관리, 홍보, 단체 운영 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핵심어 : 제주지역 문화예술, 공연예술, 공공성, 정책제언

Ⅰ. 서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영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범위는 공연예술 중 음악부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검열과 블랙리스트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1] 본 연구에서는 국가는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민들도 참여하는 예술영역을 만들어내며,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바람직한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의 문화예술은 어느 한 주체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의 의견

1) 김소연(2015), "사회적 논란과 예술의 공공성,",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연극평론」 79권의 146쪽에는 이러한 비판들이 있다. "심사위원에게 심사결과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고, 작가를 찾아가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방해를 하고, 특정한 작가를 배제하는 행위"가 당시에 연극계에서 자행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사회적 논란은 배제해야 한다”(김소연, 2015, 149)는 논리로 예술을 규제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았다. 포스트모던한 시대에 사회적 혼란은 많은 토론을 만들어내고, 억압의 아니라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가질 필요도 있다.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와 역할을 확보해야 공공성과 예술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주지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을까를 고민해왔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나라 헌법은 예술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2]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예술활동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술의 공공성은 부정되며 따라서 예술에 대한 일체의 공권력 개입(규제는 물론 지원까지도)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에 대한 규제와 검열, 심지어는 공공적 역할을 부정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주지역의 예술 영역에서의 공공성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각각의 주체와 예술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도 살펴보고자 했다. 제목에서의 주체별 역할이라고 규정하였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역할도 거버넌스시대에 공공성확보를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할 때에는 공공부문만 고집하기를 유보하고 각각의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는 형태로 확대하였다.

한혜선(2015, 268)은 김세훈 외(2008, 21)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술분야의 공공의 이익은 예술의 지향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통합이나 문화복지를 성취하게 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예술영역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공성은 국가의 지원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의를 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역인 개입도 성립할 근거를 만드

2) 한혜선(2015), “예술지원에 입각한 공공성에 대한 고찰,”한국연극교육학회, 「연극교육연구」 26권, p.267.

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살펴야 할 것은 예술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해 내는 것인지, 혹은 예술의 결과가 외부효과를 발생하여 공공성 확보에 도움을 준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예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각각의 주체별 역할들도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Ⅱ.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 충실하여 그 선행연구 범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개념과 이론, 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문화예술의 가치와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가. 공공예술의 가치

김이순(2014)은 김준기가 정의한 공공예술의 정의 5가지를 들어 공공예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이순,2014,48)[3)]

① 비물질적이며 비 영구적인 예술실험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식과 태도의 공공예술을 말한다.

② 사적으로 소유가능하지 않은 예술을 말하며, 그것은 예술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공히 해당한다.

③ 예술을 심미적 수준의 창작과 향유의 과정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

3) 김준기(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주최 “새장르 공공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재인용.

천으로까지 확장해 사고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④ 새 장르의 용어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벗어나서 과정 그 자체에 주목하며 상호작용, 효율성 등을 주요 개념으로 도입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모더니즘 예술의 폐쇄적인 창작과 매개, 소통의 방식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하준은 공공예술의 규범적 가치(이하준,2016,236)를 고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누구나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가 있다.
2) 누구나 심미적 가치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갖는다.
3) 예술은 공공재이며 사회적 공익에 기여한다.
4) 예술의 창작, 접근, 향유에 대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예술가 중심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한계

한스 애빙(Hans Abbing)은 예술지원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4] 예술가들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관심이 있다면 정부 지원으로 예술가들의 소득수준은 실제로 높아졌는가? 아니면 예술가의 수만 늘어났는가? 예술세계의 빈곤현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해 예술계의 승자독식현상, 직장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 금전적인 보상추구 성향, 위험감수 성향, 자만심과 자기기만, 잘못된 인식의 문제로 인한 이유로 예술세계의 빈곤현상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혜선(2015, 280)은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왜곡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술의 공공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역할과 책임을 공감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짐에도 관료와 정치인들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할 가능성으로 인해 예술계의 비용질병 치료보다는 다른 일부의 정치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

4) 한혜선(2015), “예술지원에 입각한 공공성에 대한 고찰,”한국연극교육학회, 「연극교육연구」 26권, p.277.

재원이 쓰여진다면 예술계는 현재의 상태를 답보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 재정립

전달체계의 왜곡과 국가의 예술에 대한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술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의 관료적, 이데올로기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진엽, 2016, 147).

둘째, 성찰적 시민의 자기관리적 역량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효과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둘을 잘 매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김진엽, 2016, 147).

셋째, 오귀스탱 지라르의 주장처럼 소외계층의 교류와 정부가 중심이 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1972년 프랑스 문화부의 연구조사부장 오귀스탱 지라르(Augustin Girard)는 유네스코의 의뢰로 발간된 「문화발전 : 경험과 정책(Cultural development : experiences and policies)」이라는 보고서에서 문화민주주의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과 대중을 어떻게 접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현대 문화예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그 동안의 여러 국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문화의 민주화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양을 함양하거나, 이미 교양교육이 전제가 되어있는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즉,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문화의 민주화 정책이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전체국민이 아닌 일부 교양계층을 위해 쓰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지라르(Augustin Girard)는 문화민주주의적인 정책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소수자가 문화적 소통을 통해 다른 사회계층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을 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대중을 향해 일반 소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최미세, 2017, 206).

넷째,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은 사회결속에 기여와 소외층을 포용해야 한다.(p.208) : 오

늘날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은 사회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외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은 가난과 소외로 오는 사회적 배제현상에 대응하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최미세, 2017, 208).

다섯째, 국가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해독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문화적 취약은 단순히 문화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해독력(cultural literacy)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해독력이란 특정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해당 사회의 삶과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문법을 성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지게 되는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한다(최미세, 2017, 209).

여섯째, 국가는 문화예술이 사람들의 계층을 나누는 결과 등을 야기하게 해서는 안된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문화적으로 학습된 취향)의 개념을 이용하여 문화예술 계층 구분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5]을 아비투스의 한 측면으로 보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취향을 문화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부르디외는 취향의 고상함이나 천박함을 평가하는 것은 미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계급과 직업계층은 문화예술에 있어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취향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사회적 계층별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이 계급간의 차이와 불평등의 영속화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배제현상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표명한다(최미세, 2017, 211).

5) 아요 클래머(Arjo Klamer)는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회계(Accounting for Social and Cultural Values」(2002)에서 자본을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으로 나눴다(최미세,2017, 210-211). 경제적 자본은 경제적 소득이나 가치를 창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은 각각 우정, 집단성, 진실, 존경, 책임감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적 가치체계, 믿음과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최미세,2017, 210-211).

2. 문화예술의 공공성 개념과 속성

가. 공공성의 유형과 일반적 개념

한혜선(2015, 266)은 공공성이란 국가, 정부,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적인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공공성 개념관련 이론을 유형별 정리하고 있다. 영역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절차의 공공성, 이유제시의 공공성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있다(한혜선, 2015, 271).

첫째, 영역(sphere)의 공공성 이론이다. 영역의 공공성이론을 정리해 보자면 통치 권력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고유함 내지 이 고유 영역을 사적 영역과 구별하여 한정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둘째, 주체(agent)의 공공성 이론이다. 사회의 공통 이익을 배려하고 실현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부담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절차(procedure 내지 process)의 공공성 이론이다. 특정집단이나 집단을 넘어서서 다수의 의사와 견해가 광범위하게 투입되는 민주적 경로를 거치게 된다는 입장이다.

넷째, 이유제시(reason)의 공공성이론이다. 우리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근거내지 이유를 기준삼아 공공성을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공적 이유는 개인이나 부분 집단의 특유한 신념 체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이해가 가능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이유이다. 공적이유는 사적이유에 기한 행동을 제약하는 공적 결정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종수는 공공성의 구성요소를 다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다(이종수,2013,39)

① 공공 또는 다수에 관한 일(public as group affairs).

이는 개인 또는 가족과 대비되는 개념의 공공성이다. 이것은 공공영역(public shpere)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공영역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모두를 포함한다.

② 권위(public asauthority)를 의미하는데 '공권력'과 연관된다. 공신력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단위 민간 기업 등의 민간조직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성은 공동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권위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권력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되는 것이다.

③ 정부(public as government)를 말한다.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정부와 시장으로 표현해 왔다. 이러한 개념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른 정의는 공·사 부문의 구분이 혼용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④ 유불가능성(public as non-exclusiveness)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논하는 공공재적 의미이다. 배제가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인 재화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⑤ 이타성(public as altruistic interest)을 의미한다. 교육이나 언론, 의료 등 역시 전적으로 사익과 이윤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공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익이나 이윤추구는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공공성이란 곧 비사익성을 의미하고, 사익성을 이기적 욕구충족 활동이라 한다면 공공성은 이타성 또는 공익성이 되는 것이다.

사이토 준이치 교수는 공공성에 대하여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미세, 2017, 212).

① 공적인 의미로 국가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② 공통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문화예술분야 공공성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예술의 공공성은 소통을 통한 공익 추구라할 수 있다(김진엽,

2016, 144). 하버마스는 공공성을 의사소통적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다.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이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의 기본이 의사소통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성은 정부의 정책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욕구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선의 공익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전통적인 '예술가-감상자'계층의 방식에서 예술의 공익성 추구, 참여하는 예술, 문화예술 공간의 확대라는 예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공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김진엽, 2016, 153).

다. 듀이가 강조하는 문화예술분야 공공성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성 관점들이다. ① 예술은 커뮤니티의 교육과 관계하며, '공적인 것'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민주식, 2013, 185).

② 듀이는 공중의 참가(이는 랑스테드의 문화민주주의와 연결되는 맥락)에 의해 예술의 공공성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술은 '소통하는 관중'을 창출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장애물 없는,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라고 주장한다(민주식, 2013, 176).

③ 듀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참가라고 하는 관점을 끌어내어, 예술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모든 예술은 표현이기 때문에, 소통(communicate)한다. 예술은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것의 의미나, 단지 외면적인 행위로 옮기는 것만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같은 의미를, 분명히 그리고 통절히 느끼게 한다. ... 커뮤니케이션은 참가시키는 과정이며, 종래 고립되고 단독이었던 것을 공유하게 하는 작용이다(민주식, 2013, 192).

④ 듀이는 예술이 '무엇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생명활동에 의미와 완성으로 향하는 궁극적인 접촉을 부여해야'한다고 서술하고 있다(민주식, 2013, 198).

⑤ 행위의 결과가 공적인 것이면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듀이는 행위의 결과가 누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서 공공성을 구분하고 있다. 공통의 관심과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사람들은 국가가 특별한 조치나 규칙을 마련해주기를 요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규칙을 마련할 사람을 선발하기도 한다. 결국, 이처럼 행위의 결과가 행위당사자 또는 그를 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구분되고, 공적인 것, 즉 공공성이 획득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공무원과 공중이 생겨난다고 한다(권정선·김희용,2018, 38).

⑥ 듀이는 공공성의 실천에 관심(p.39) : 공공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통의 관심과 이해'라는 사실에 있다기 보다는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데 있다고 교육적 측면과 연결시켜 주장하고 있다(권정선·김희용,2018, 39).

⑦ 예술작품 – 완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미디어(p.45) : 존 듀이의 표현이다. 예술작품은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경험의 총체이며, 이는 감상의 과정을 거치며 또 다시 감상자에게 새로운 의미로 경험된다. 새로운 의미로 경험된다는 것은 '감동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 예술작품을 제작한 사람이 표현한 것을 마치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처럼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이 일상의 구체적인 삶, 경험을 담고 또 표현하고 있으며, 감상자는 그것을 자신의 경험 속에 작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인간들 사이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완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미디어가 될 수 있다(권정선·김희용,2018, 45).

라. 이하준의 예술의 공공성

이하준은 예술의 공공성은 예술이 단지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공익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시각에 기초한다(이하준,2016,222)고 정리하고 있다.

3. 함의 : 제주지역 예술부문의 공공성 내용과 범위설정

본 절에서는 공공성의 일반개념적 성격과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연구과정에서 하버마스와 듀이의 소통과 실천, 소외극복에 대한 노력 등 예술에 대한 공공성 맥락은 연구자들에게 큰 반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예술부문의 공공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문화예술분야의 소통과 참여에 의한 소외극복”에 있다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글의 이후 전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지역의 지원사항에 대한 언급과 각각의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Ⅲ. 제주도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확보를 위한 노력

1.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심사를 통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부터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심위위원회 거쳐 지원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으로 인해 민간에 대해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예산서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련 부분에 지원하는 민간 자본보조사업, 민간 경상보조 사업, 민간 행사보조 사업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한다.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청내에서의 심사위원을 통한 심사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의회의 절차에 따라 예산을 심사한다.

이 보조금은 문화예술 분야와 일반 단체나 마을 등의 문화예술사업에 큰 도움을 주는 실체이다. 큰 의미의 공공의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모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필자 주】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공모를 하지 않고 지원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가능하다-필자 주】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복합문화예술공간의 기획전문가 배정

복합문화예술공간이란 두 개 이상 기능을 보유하는 시설을 칭하는 바 제주도에서는 문예회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88년 2월 12일 제주도 문화진흥원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변화해왔다. 현재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조례(2017년 9월 27일 시행). 법으로써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1항에 문예회관관련 규정이 있다. 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10년 1월 6일 제정, 조례 제602호)가 있어서 이에 따르고 있다. 각각의 조례는 운영과 관련한 것이며, 지원이나 인력배치 등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각 공연장의 요청에 의해 기획전문가들이 배정되어 있다.

제주도에는 문예회관형태의 기관이 세 곳이다. 제주시 소재, 문예회관과 아트센터, 서귀포시 소재 예술의 전당 등이다. 모두 기획전문가가 배정되었다. 물론 최근의 일이다. 문예회관 세 곳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공연장과 민간부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간의 경우에는 기획전문가, 혹은 컨설턴트가 없다. 예를 들어 설문대 여성 문화센터 홀, 한라대학

교 한라 아트홀, 제주대학교 아라 뮤즈홀 등이 기획전문가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해당된다. 이 공연장들에 대해서는 기획전문가가 배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도립예술단과 그 외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주도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행사운영비를 지원한다.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지만 관리는 관련 행정시와 문예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립 무용단은 문예진흥원(문예회관)에서 관리한다. 제주도립합창단과 관현악단의 경우에는 제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 도립합창단과 서귀포 도립 관악단의 경우는 서귀포 시정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외 법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면 지방보조금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공모를 해야 하고, 공모하면 그 지원과 관리에 대한 부문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4. 문화예술부문 지원 제도 마련

본 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측면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본 조례들은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본 글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조례 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만을 적사하였다. 본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 이외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0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항목들이다.

-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비
- 탐라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연구·조사·기록화사업 및 탐라문화제 개최 사업 지원

- 제주 4·3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4·3문화예술축전 개최 사업
-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사업 지원
- 제주의 전통문화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사업 지원
- 중앙 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도 예선대회 개최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사업 지원
- 제주 미술활동 발전을 위한 미술대전(미술, 건축, 사진)개최 사업 지원
- 원도심 및 지역특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사업
-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입춘 굿, 음악회, 전통민속재현행사, 각종 전통민속축제 개최 사업 지원
-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사업 지원
- 종교전통문화 육성·계승·체험 사업,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종교지도자 국제문화교류, 도민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위한 부처님오신 날 봉축행사, 연등문화행사, 한라산영산대재행사, 성탄절 경축행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회, 공연, 전시 등 종교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
- 공공조형물의 홍보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 사업
-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거리활성화 지원을 위한 항목들이 언급되어 있다.

- 거리공연자의 발굴
-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지원
-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 거리공연자에 대한 오디션
-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제5조와 제7조에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
-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도민 여가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 도민 여가시설 및 공간의 개선 및 확충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 여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 제주자치도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그 밖에 도민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외에도 제7조에 따르면

-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제9조에는 재정지원이라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개설장소의 확보 등 도민문화시장 개설·운영 및 판로 지원
-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홍보

- 도민문화시장 육성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에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위해 지원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 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용
-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 마을공동체미디어 홍보지원

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재정지원항목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결연사업
-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홍보사업
-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이 제6조의 사업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문화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문화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 활용 및 양성
- 소장품 보존시설, 전시시설, 보안시설 등 관련 개·보수
-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

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카.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에는 도지사의 지원가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을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권장·지원한다.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는 도지사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
-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7조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활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인재 육성
-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교류

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6)]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그 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조항이다.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이상에서 제주도내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조례에 대한 내용과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물론 정책분야가 아닌 분야의 조례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제주도의 모든 조례를 모두 나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본 고에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

Ⅳ. 주체별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본 글은 정책제언을 위한 글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는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재단이나 협회 등은

6) 본 글에서는 조례에 있는 표현 '장애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기로 한다.

민간부문이라 할 수 있지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리역할을 하는 부문이라 판단하여 공공부문의 주체로써 포함하여 전개하였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관련 정책제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주도청이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부문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적게하는 것이 소통과 참여, 문화부문 소외의 극복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 팔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극 고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되 검열이나 블랙리스트와 같은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방정부와의 친밀도가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참여와 각 주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전문직 공직자를 선발하고 배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청과 시청에 배정하기를 바란다. 문화예술행정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해야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함은 물론 고객들이 종사하는 장르의 다양성, 각 고객들마다의 추구하는 철학의 다양성 등에 의해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복권기금을 문화예술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예회관의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기획, 그리고 예술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지원으로 전달체계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7)]

2. 제주도 의회 관련 정책제언

제주도의회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행정이 균형 잡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

7)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2018년 11월 9일 오후 두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발제는 박상택(전 예술의 전당 사무처장/ 전 부산문화회관 관장)의 토론에서 참고.

첫째, 예산지원에 있어서 장르별, 대상별 편중현상을 막아주어야 한다. 예술분야는 장르별 다양성으로 인해 각 장르의 속성을 파악하고 적정한 지원이 기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분야의 소외계층을 찾아내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이며, 지방정부의 예산이 형평성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안내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 장애인, 학생, 노인, 섬 주민 등의 문화예술분야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예술분야 전문가들의 예술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고용창출에 지원해주어야 한다. 예술계통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의회가 전체적으로 앞장 서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해당 과들의 역할로 볼 때 제주도청 문화정책과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고려보다는 제주도의회가 문화분야의 고용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주도립 예술단 관련 정책제언

제주도립 예술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오케스트라, 관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단체와 구성원들의 역할은 제주도 문화예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도립예술단은 순수예술성지향을 제1의 가치로 삼도록 배려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도민이나 고객과의 공진적 맥락에서의 교육부문을 담당하게 하거나 도민의 행복과 관광영역과 연결에 기여하기 위해 순수예술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순수예술성을 지향하면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 도립예술단이 고객들을 위한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 필하모니 등 세계의 유수 오케스트라들은 자체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프로그램이라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립예술단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이 추가적으

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도내에 있는 고객들이 수준 높은 내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다.

셋째, 도립예술단의 단원들은 제주도내에서 안정된 직업군 중 하나이다. 예술가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제주지역 고등학교와 대학 출신들이 일정부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인재 고용의 역할도 하며, 지역에서 공부하거나 지역출신 예술가들이 다시 제주지역으로 돌아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4. 문예회관 등의 역할 관련 정책제언

가. 나눔과 참여,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제고

문예회관에도 열린 공간, 열린 무대를 만들어 나눔과 참여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상카르트 104(le Centquatre)'는 문화공간이 지역민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다. 파리 19구에 있는 이 공간은 원래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다가 방치됐다. 이후 파리시의 지원 아래 무려 1억2천만유로(약 1천530억원)를 투입해 2008년 문을 열었다. 과거, 이 일대 지역민의 3분의 1이 실업자인 만큼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은 동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누구라도 이곳에 들러 춤을 추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열린 무대로 만들면서 현재 이곳은 빈민가의 예술 명소가 됐다[8].

우리 제주도의 문예회관에서도 보면 공연장과 전시관 사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비와 햇볕을 피해 그룹댄스연습하는 모습을 본다.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8) 영남일보,2013.11.7., 이효설 기자, 선진 복합문화공간을 가다.1, 왜 복합문화공간인가?

나.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순수예술 보호와 활성화 유도

문예회관이 수입을 스스로 재 투자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기획공연을 하면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제주도계정으로 들어가고 문예회관 등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관련 프로세스 때문일 것이다. 문예회관이 일정부분 보조금은 받더라도 예술단체와 기획을 하여 수입을 확보하고, 그 수입이 문예회관과 예술단체에게 인센티브로 다시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 등이 홍보와 기획을 지원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하고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예회관도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9]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문예회관에서 만들어진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시스템(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제12조 ② 항)이 아니라 특별회계 혹은 독립채산제 운영의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형 문예회관 운영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문예회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혹은 지원조항 추가

문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으나 문예회관관련 지원법은 없다. 문예회관 관련 지원법과 조례를 만들고 문예회관의 수준을 확보하는 사업, 문예회관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하는 사업, 수익사업을 통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에서는 기획공연과 초청공연을 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만이 있다(제12조 ①항).[10]

9)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2018년 11월 9일 오후 두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발제는 박상택(전 예술의 전당 사무처장/ 전 부산문화회관 관장)의 토론에서 참고.

10)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2018년 11월 9일 오후 두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발제는 박상택(전 예술의 전당 사무처장/ 전 부산문화회관 관장)의 토론에서 참고.

라. 문예회관의 지향과 기능 확대

존 레인(John Lane)은 복합문화예술공간의 기능을 ① 참여의 장, ② 개방성, ③ 사회성, ④ 지역사회의 시민에 대한 기여, ⑤ 젊은 세대로의 향유계층확대, ⑥ 예술가를 위한 활동공간의 제공 등 여섯 가지로 설명하였다(임해경,2012,230).[11] 필자들은 이러한 여섯 가지의 틀이 제주지역의 문예회관 등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생각하였다.

제주지역에 있는 문예회관과 그 외의 복합문화예술공연장들이 현재에도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존 레인의 틀을 참고하고 분석, 평가하여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데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5. 문화예술재단의 역할 추가 정책제언

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청이 맡기 어려운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조직을 제고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청의 예산과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주문화예술의 공공성(문화예술분야의 소통과 참여에 의한 소외극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부문을 추가로 적극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재단 내에 담당할 부서와 연구진을 모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 문화예술에 대한 미래계획은 물론 부문별 대안들과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위한 예산과 방법 등을 연구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예술재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부문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에도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다른 조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할이 대단하다고 본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예술단체의 실무자, 도립예술단원, 문화정책과 공직자, 문화예술재단 근무자 등이 실무에 덧붙여 이

11) John Lane(1978), 「ARTCENTERS」, Newsphire USA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7), 「아트센터」, 문화예술총서 6, pp.70-91에서 재인용

론적인 내용, 문화정책의 구조적 측면,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 등을 담아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2)]

6. 예술가 협회 등에 바라는 정책제언

예술가들의 모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독립적 행정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이 시대가 오면서 협회 등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예술가 협회, 각 장르별 협회 등 어느 부분 소중하지 않은 단체들이 없다. 이 단체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청은 협회들이 도청의 축제 등을 위탁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회들이 소속회원들의 활동과 권익, 소외에서의 극복, 적정 임금 확보, 사회보험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회에서는 소속회원, 소속단체들의 민원사항을 잘 시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민원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제주 문화예술발전의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도청은 협회활동들 중 화합과 그 화합의 과실(열매)이 지역에 긍정적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화합을 위한 축제에 지원을 하고, 그 축제에 도민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마당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공연예술적 맥락에서 보면 섹소폰 협회의 음악회, 합창연합회의 발표, 제주 관악제 등이 작지만 그런 활동의 사례라 할 수 있다.

7. 교육기관에 바라는 정책제언

제주도의 문화예술분야의 조직관리, 보조금관리, 홍보, 단체 운영 등을 위해서는 문화

12)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2018년 11월 9일 오후 두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발제는 박상택(전 예술의 전당 사무처장/ 전 부산문화회관 관장)의 토론에서 참고.

예술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첫째, 대학의 문화예술관련 학과에서는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과목과 유사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의회의 정책자문위원, 문화예술재단, 문예회관 등의 인력을 모집할 때에는 학부나 대학원 시절에 문화예술행정 혹은 문화예술경영과목이나 그와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시작은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분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들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연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의를 만들게 되었다. 첫째, 제주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의 공공성은 “문화예술분야의 소통과 참여에 의한 소외극복”에 두어야겠다는 지향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제주지역내의 문화예술관련 지원조례와 그 조례내용 속의 지원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부문 각 주체들을 위한 제언을 제주도청에 바라는 것과 그 기관 자체에 바라는 사항으로 혼재해서 제안하게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 글을 쓰면서 필자가 느끼는 것은 참여와 소통이 가능할 때 문화예술분의 문화민주주의(참여에 의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를 만들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글을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혜선(2015,282)의 주장처럼 예술가분들과 각 기관들은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예술이 공공성을 확보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대해 학습을 하고, 제주도정과 도의회, 그 외 예술지원기관을 비롯한 각 주체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 문헌]

권정선·김희용(2018),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의미와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철학학회, 「교육철학연구」 제40권, 제2호.

김소연(2015), “사회적 논란과 예술의 공공성,”,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연극평론」 79권.

김세훈 외(2008),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메시스.

김진엽(2016), “예술경영(Art Management)과 공공성(Publicness),”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 연구」 17권 6호.

민주식(2013), “예술의 뿌리로서의 공공성 – 존 듀이이 예술론의 새로운 해석,”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8권,

이종수(2013),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이하준(2016), “예술의 사물화 비판과 예술의 공공성 – 아도르노와 듀이의 가상적 대화,”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제80호,

임해경(2012), “인문주의에 토대를 둔 복합공연장의 공공성 연구–대전문화예술의 전당 Winter Festival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 연구」 87권.

최미세(2017), “문화예술교육과 공공성 – 베를린 필하모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국괴테학회, 「괴테 연구」 30권.

한혜선(2015), “예술지원에 입각한 공공성에 대한 고찰,”한국연극교육학회, 「연극교육연구」 26권